

공공구매론 추가약정서

(판매기업용)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본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공공구매론」 을 약정함에 있어 ____년 __월 __일 체결된 여신거래약정서에 추가하여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하며, 은행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제 1 조 (용어의 정의)

이 약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기관” 이라 함은 판매기업으로부터 경상적인 상거래로물품 등을 발주서를 통해 구입하는 기관으로 은행과 판매기업의 물품, 용역 등의 제조 및 가공 등에 필요한 생산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2. “판매기업” 이라 함은 구매기관과 물품 등을 납품하는 기업중 은행에 입금계좌를 개설하고 구매기관으로부터 발주서를 발급받아 물품 등을 납품한 후, 입금계좌를 통하여 거래대금을 결제받는 기업을 말합니다.
3. “발주서” 라 함은 물품 등의 품목, 수량, 납품기일, 금액 등을 전자적 방식 또는 기타 형식으로 작성한 구매기관과 판매기업간의 계약체결확인서, 물품공급계약서, 물품구입주문서, 구매승인서 등을 말합니다.
4. “발주서방식” 이라 함은 구매기관에 대한 납품실적 등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약정하고 발주서를 용자대상 중빙으로 하여 건별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방식을 말합니다.
5. “공공기관” 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6. “공공구매론” 이라 함은 구매기관과 은행간의 업무협약에 의하여 구매기관은 판매기업의 발주서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며, 은행은 발주서 방식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구매기관은 납품완료후 결제대금을 은행이 지정한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의 대출을 말합니다.
7. “가상계좌” 란 발주서 건별 결제대금의 식별을 위하여 판매기업의 입금계좌와 연결되어 은행 내부적으로 관리되는 계좌번호로 결제대금은 가상계좌를 통하여 관리됩니다.

제 2 조 (건별대출의 실행)

- ① “여신거래약정서” 상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건별 대출금은, 구매기관과 은행간의전자적인 방법으로 은행에 통지된 “발주서” 금액의 최대 80% 범위내에서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은행이 정한 비율내에서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건별대출신청은 납품기일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③ 제 1항의 신청에 따라 은행은 내부 심사 후 대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④ 은행 또는 전산상의 사유로 대출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에 대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3 조 (입금계좌 지정)

건별대출금 또는 본인이 구매기관으로부터 수령할 납품결제대금의 입금계좌는 본인 명의 아래 계좌로 하기로 합니다.

예금주	계좌번호

제 4 조 (건별대출금에 대한 만기일 및 상환방법)

- ① 건별대출금의 만기일은 발주서상의 납품기일로부터 60 일까지로 합니다. 단, 최장 대출기간은 발주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② 건별대출금의 상환은 그 대출금에 대응하는 발주서의 매출채권 지급기일까지 동 채권의 채무자인 구매기관이 제 3 조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 결제대금을 통장과 거래인감없이 인출하여 충당하기로 합니다. 다만, 가상계좌 방식인 경우에는 구매기관으로부터 수령한 결제대금으로 해당 대출건을 상환한 후 차액이 있을 경우 지정된 입금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 ③ 납품결제대금이 건별 대출금에 미달하는 경우 나머지 대출금은 본인이 건별 대출금 만기일까지 상환하기로 하며, 건별 대출 만기일까지는 연체적용을 유예기로 합니다.
- ④ 건별대출 실행 후 발주서의 취소, 변경 및 감액등의 사유로 대출잔액이 계약종류별 용자비율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별대출금 만기일에 불구하고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 5 조 (납품결제대금 수령방법 변경금지)

- ① 본인은 구매기관과의 납품결제대금 수령과 관련하여 「공공구매론」 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납품결제대금 수령방법, 결제은행 및 지정계좌를 변경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 3 조의 지정계좌는 은행의 사전 서면 동의 하에 변경할 수 있기로 합니다.
- ② 건별 대출금 상환 전에는 해당 발주서에 대하여 구매기관 내규에 의한 매출채권 양도양수 및 선금지급 요청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 6 조 (대출 신청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이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대위변제정보·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때 또는 본건 대출과 관련하여 본인이 은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
- 2. 은행 내규에 따라 신규여신금지에 해당되는경우.
- 3. 본 대출 이외 은행이 본인에게 제공한 타 여신이 연체된 경우.
- 4. 전쟁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인 경우.
- 5. 인터넷 등 장애나 은행 전산상의 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은행에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를 못하거나 은행이 대출을 할 수 없는 경우.
- 6. 구매기관이 동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은행에 지급하여야 할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연체한 경우.
- 7. 본인의 채권자로부터 구매기관의 매출채권을 대상으로 압류·가압류, 추심, 전부명령 또는 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 8. 발주서의취소 또는 변경 및 감액, 반품,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 등으로 건별 대출금이 당해 매출채권 금액보다 클 경우 또는 구매기관으로부터 대금지급을 못 받게 된 경우.
- 9. 발주서상 선금지급 또는 매출채권양도양수 사실이 있는 경우.

제 7 조 (대출약정의 종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약정” 에 따른 은행의 본인에 대한 대출의무는 면제되고, 본인의 은행에 대한 본 채무는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은행에 변제하기로 합니다.

- 1. 본인 및 구매기관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7 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2. 본인 및 구매기관이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 대위변제정보·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때 또는 본건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
- 3. 구매기관에 대한 파산절차, 회생절차 개시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재산보전처분의 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신청,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회사의 해산결의 등이 있는 경우.
- 4. 본인 또는 구매기관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을 위한 발주서가 아닌 자금유통을 목적으로 발주서를 발급한 경우.
- 5. 본인이 동일한 발주서에 대하여 타행과 중복 약정을 체결하거나 대출받은 경우.
- 6. 본인과 구매기관이 은행의 동의 없이 납품결제대금 수령방법, 결제은행 및 지정계좌를 변경한 경우.
- 7. 건별대출실행 후 해당 발주서에 대해 선금지급사실, 채권양도양수사실, 채권압류·가압류사실 등이 있는 경우 또는 대금지급 기관이 변경된 경우.

제 8 조 (면책)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은행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9 조 (본 추가약정의 효력)

이 약정, 여신거래약정,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이 약정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여신거래약정,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의 순서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 10 조 (기타 특약사항)

--

본인은 본 약정서의 사본을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본 인	(인)
---	-----	-----

20 년 월 일

본인(채무자) : _____ (인)

주 소 :